

특례적용신청서

1. 신청인 및 원천징수 의무자 현황

신 청 인		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벤처기업 현황		
성 명		법인명		
주민등록번호		대표자		
주 소		사업자등록번호		
직 책		사업장 소재지		
주식매수선택권전용계좌		벤처기업 확인내역	번 호	평가기관
금융투자업자	계좌번호			
			확인일자	유효기간
자 회 사 임 직 원 여 부		[]		
자회사의 법인명		사업자등록번호		

2. 해당 연도에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

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	① 행사한 수량	② 1주당 행사가액	③ 행사일의 1주당 시가	④ 행사이익 [①×(③-②)]	⑤시가 이하 발행이익	⑥과세특례 적용(④-⑤)

3. 적격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

가.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% 초과 보유 여부			적격 여부
나.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등 해당 여부	발행주식 총수의 1% 이상 보유 여부	최대 주주 여부	적격 여부
다.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% 초과 여부	본인의 해당 여부	10% 초과자와 특수관계 여부	적격 여부

4. 과세특례 신청내용

[] 종합소득세 과세 제외

[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의 양도 시 양도소득세(2025년도 이후에는 금융투자소득세) 신고·납부]
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6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합니다.

신청인
주식매수선택권부여벤처기업 귀하

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
첨부 서류	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개설확인서(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6호의6서식)	수수료 없음
-------	--	--------

작 성 방 법

-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으로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받는 대신 벤처기업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으로 보아 양도소득세(2025년도 이후에는 금융투자소득세)로 신고·납부하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.
- 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이 제출하는 경우 자회사 임직원 여부에 체크[√] 후 해당 자회사의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추가로 기재해야 합니다.
- “벤처기업 확인내역”란은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적습니다.
- ⑤시가 이하 발행이익은 행사한 수량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 1주당 시가와 1주당 행사가액의 차이를 곱한 값을 말합니다.